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전략기술 육성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개발 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조정 및 우주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 우주 관련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원 3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4명, 6급 11명, 7급 2명, 9급 1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연구사 6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367호, 2024. 3. 29.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의 존속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일부를 과학기술 직군·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초원천연구정책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과학기술
일자리혁신관”을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공공융합연구정책관 및 연구성
과혁신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7호”를 “제21호”로 하며, 같
은 조 제4항 중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
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58호”를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2호부터
제4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연구성과혁신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1조제3항제45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
을 보좌한다.

제7조제6항 중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생명기
술과·첨단바이오기술과·융합기술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
과·원자력연구개발과·거대공공연구협력과·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기관지원팀”을 “연구개발
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첨단바이오기술과·공공융합기
술정책과·원자력연구개발과·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미래에너지환경
기술과·연구성과혁신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기관혁신지원팀”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을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8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기초과학연구원 청사의 설계 및 건설 추진

제7조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삭제한다.

⑨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2.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3.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분석
4. 원천기술개발사업 발굴·기획·총괄 및 조정
5. 대형 연구개발사업단의 법인 설립허가
6.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총괄
7.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 시행 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추진실적 평가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지원
9.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관 육성·발전 지원
10. 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11.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

12.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지원 총괄 및 제도의 운영
1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나노랩센터의 구축
· 운영
14.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국제협력 지원
15.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기본·시행계획 수립
· 추진
16.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발전
17.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18.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19.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0. 나노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인프라 구축 지원
21. 나노기술지도 작성 및 나노기술영향평가 계획수립·시행
22.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디지털화 정책 수립 및 지원
23. 양자컴퓨팅 관련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24.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25. 양자컴퓨팅 국제협력

⑩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
진

2.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 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3.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4. 생명공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바이오·기초의학기술개발사업, 바이오 분야 부처 연계 사업 추진
6. 바이오·기초의학기술·뇌연구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7. 생명공학정책센터 육성·지원
8. 한국뇌연구원 설립·운영
9.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10. 생명공학·뇌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11.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12. 감염병 연구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시설의 육성·지원
13. 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 한국파스퇴르연구소 (IP-K) 및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4. 생명공학 분야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5. 생명공학 분야 분류체계의 수립·관리 및 개선
16. 생명공학 분야 기술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17. 생명공학 분야 기술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18.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9. 생명공학 분야 통계조사·분석
20. 기초의과학 연구개발의 촉진과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의사과학자 양성
22. 바이오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창업기업 보육
23.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
24. 합성생물학·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3세대 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육성·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
25. 데이터기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
26.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27. 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28.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및 활용체계 조성
29.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전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
30.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육성
31. 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2. 생명연구자원 분야 국제협력 증진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34. 생명연구자원 분야 부처 간 연계 사업 추진

35.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실태 조사

⑪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운영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3. 융합기술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4.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6.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지원

7.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분석

8. 다학제(多學際) 간 융합 연구사업 발굴·지원

9. 첨단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육성·지원

10. 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11. 나노·바이오·정보통신·인지과학 기반 융합연구 전략수립 및
사업 추진·지원

12. 융합기술 분야 국제협력 지원

13.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 지원

14. 민·군 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방 분야 기초·원천연구사업의 기획

• 추진

16.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 간의 협력

• 연계 활동의 촉진 및 지원

17. 극한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

18. 극한부품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분석

19. 극한소재 실증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원

20. 지구과학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추진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22.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지원

23. 공공 복지·안전 연구사업 추진

24.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25.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추진
및 성과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지구과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

⑫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

의 진흥·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

4. 연구용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5. 차세대 노형(爐型)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6.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조정 및 기금의 조성·관리

7.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이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8.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9.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

10. 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11.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산학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12. 원자력 및 방사선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13.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14.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지원

15.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양성 계획 수립 및 산학연 원자력 인력 협의체 구성·운영

16.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및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

한 사항

17.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협력 지원 총괄
18. 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19. 방사선,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
20. 방사선 의학 연구 지원 및 이용인력 육성·훈련
2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관리
22. 국제원자력협력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3. 원자력기술 수출 진흥계획의 수립·추진
24. 국가 간 원자력협력협정의 제·개정
25.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 기반조성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26.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지원
27.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지원
28. 원자력 선진기술 보유국과의 협력 및 원자력 후발국의 지원·협력
에 관한 사항
29. 국제기구(IAEA, IFNEC 등)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30.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D) 내 원자력에너지기구(NEA) 협력사업 운영의 지원
31.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 아시아원자력협력
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2. 연구용 원자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
33. 양자간 및 다자간 원자력협력 기술 지원 총괄

- 34. 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 35.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GIF)의 운영
- 36. 원자력 관련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및 관리
- 37. 원자력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의 해외 인턴십 지원
- 38.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⑬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형연구시설 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 2. 대형연구시설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보완
- 3. 대형연구시설 관리 및 활용 지원
- 4. 대형연구시설 관련 산학연 생태계 육성
- 5. 대형연구시설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기관 육성·지원
- 6.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발 육성·지원
- 7. 대형가속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국내 대형 가속기 간 효율적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 9. 해외 대형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10.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개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11. 양성자가속기 관련 기술개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12. 중이온가속기 관련 기술개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13. 과학기술분야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지원 총괄

⑭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지원
3.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추진
4.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
5.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
6.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환경 등 공공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지원
8.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국내 창구 역할 수행
9.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협상·자문·검토·이행 등에 관한 사항
10.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의 활동 및 의제 대응
11.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활동 및 의제 대응
12. 국내 유관기관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활동 촉진 및 지원
13.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와 재정지원체제 간 연계 촉진
14.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NDE)로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이전·확산 지원

15.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 지정기구로서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 지정기구로서 기후변화대응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관련 인력 양성 지원
 17.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18.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9. 핵융합 분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0.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관련 장치 개발·제작,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및 핵융합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21.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2.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비 고도화에 관한 사항
 23.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24. 플라즈마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분야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 ⑮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2. 특정연구기관 육성 관련 법령·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민간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과제의 발굴·기획
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
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기획성과관리사업 운영
7. 과학기술 분야 사업의 기술료 제도 운영·개선
8.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사항은 제외한다) 등 평가에 관한 사항
10. 공공연구성과 일자리 협업 지원 및 조정 총괄
11. 공공연구성과 일자리 창출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12. 공공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 지원 정책 수립
13. 공공연구성과의 활용·보급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15.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연구성과 관리·분석·보호·활

용(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다)·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

16.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지원
18.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지원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화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분야 기술지주의 활성화 지원
22. 그 밖에 연구성과혁신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⑯ 연구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육성·지원
2.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3. R&D 지식재산협의회 육성·지원
4.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 활용 촉진
6.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연구장비의 개발 및 신뢰성 평가체계 구축·지원
8. 연구장비산업 육성·지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9. 연구산업 기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연구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1.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12.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과 실태조사의 실시
13.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육성
14.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개선
17.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신규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전기획·조정 총괄
19. 산학연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 부설연구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0. 협동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2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⑰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법령·제도의 운영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의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 보좌
5.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해제
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 및 감독
8. 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9.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주승인 등 연구개발특구의 관리
11.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육성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12.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13.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지원
14.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15. 연구개발특구별 종합평가 계획 수립·추진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정책 수립·시행 및 법령 운영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협의회 운영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1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학·연 협력 지원
2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사업화 인력 양성, 교류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지원
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기능지구의 연계 및 발전방안 수립·추진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 방안 마련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시책 수립·추진
 24.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5.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 및 평가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
 27. 지역 수요맞춤형 과학기술사업의 추진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 위원회와의 협력
 29.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운영
 30.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31. 연구개발 특구 규제 신속확인 제도의 운영
 32.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제품·서비스 임시허가 제도의 운영
- 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술 관련 연계·협력 지원
 2.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
 3.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제도 운영·발전
 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조정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연계 활성화 지원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연구·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제5항제12호 중 “과학축전”을 “대한민국 과학축제”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에 제26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
27.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
28.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에 관한 조사·연구
29.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관련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

- 30. 미래성장동력 기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운영
- 31.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2.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
- 33.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장동력기획과장”을 “전략기술육성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국가전략기술 육성 시책의 기획·총괄
- 19. 국가전략기술의 선정·변경·관리에 관한 사항
- 20.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1.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 22.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 23.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 24.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등 분야별 지식·정보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5.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인력의 육성·확보 등에 관한 사항
- 26.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융합 기획·조정
- 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분야별 범부처·전문가 회의체의 설치·운영

28.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 안 마련

제18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820”을 “7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811”을 “784”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0”을 “1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8”을 “47”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9”를 “6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292”를 “284”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30”을 “21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

보·식품위생주사보·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0”을 “58”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통계서기보·환경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방송통신서기보·사서서기보·기상서기보·농업서기보·임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보건서기보·의료기술서기보·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820”을 “793”으로 하고, 일반직 계 “811”을 “784”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0”을 “1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8”을 “47”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9”를 “6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항공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321”을 “313”으로 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통계주사·환경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기상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식품위생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연구사 “201”을 “19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통계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사서주사보·기상주사보·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60”을 “58”로 하며,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기상서기보 · 농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의료기술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12”를 “1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87”을 각각 “169”로 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를 “4”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2”를 “20”으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3”을 “5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0”을 “29”로 하고, 위생주사보 “1”을 “0”으로 하며,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을 “15”로 하고, 공업연구사 “28”을 “22”로 하며, 사무운영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87”을 각각 “169”로 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5”를 “4”로 하며,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24”를 “22”로 하고,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51”을 “48”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0”을 “29”로 하고, 위생주사보

“1”을 “0”으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을 “15”로 하고, 공업연구소 “28”을 “22”로 하며, 사무운영주사보 “2”를 “1”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1”을 “214”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12”를 “21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4”를 “35”로 하고, 통신운영주사보 “6”을 “3”으로 하며, 전기운영서기 “2”를 “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3”을 “216”으로 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209”를 “21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2”를 “33”으로 하고, 통신운영주사보 “6”을 “3”으로 하며, 전기운영서기 “2”를 “1”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11 1)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2)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3)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표 4)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6월 30일”을 각각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3 제5호를 삭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6년

5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생략)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기초원천연구정책관 ·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u> 으로 하며, <u>기초원천연구정책관 ·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및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 ----- ----- ----- <u>기초원천연구정책관 ·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u> 으로 하며, <u>기초원천연구정책관 · 공공융합연구정책관 및 연구성과혁신관</u> ----- ----- ----- -----.
③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u>제27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③ ----- ----- ----- -- <u>제21호</u> ----- -----.
④ <u>거대공공연구정책관</u>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u>제58호</u> 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	④ <u>공공융합연구정책관</u>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2호부터 <u>제44호</u> ----- -----

다.

⑤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9호부터 제66호까지 및 제68호부터 제9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연구개발정책실에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생명기술과·첨단바이오기술과·융합기술과·거대공공연구정책과·우주기술과·원자력연구개발과·거대공공연구협력과·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기관지원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기관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생략)

⑧ 기초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

--.

⑤ 연구성과혁신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5호부터 제8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 연구개발정책과·기초연구진흥과·원천기술과·첨단바이오기술과·공공융합기술정책과·원자력연구개발과·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연구성과혁신정책과·연구산업진흥과·지역과학기술진흥과 및 연구기관혁신지원팀-----

----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⑦ (현행과 같음)

⑧ -----

항을 분장한다.

1. ~ 20. (생략)

<신설>

⑨ 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 추진

2.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
· 제도의 운영 · 발전

3.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 · 분석

4. 원천기술개발사업 발굴 · 기획 · 총괄 및 조정

5.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6.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 · 추진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 · 지원

7.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중장기계획의 수립 · 추진

7의2.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추진

7의3.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

1. ~ 20. (현행과 같음)

21. 기초과학연구원 청사의 설계 및 건설 추진

⑨ -----
-----.

1. 원천기술개발 관련 중장기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 추진

2.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
· 제도의 운영 · 발전

3. 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국내외 현황 조사 · 분석

4. 원천기술개발사업 발굴 · 기획 · 총괄 및 조정

5. 대형 연구개발사업단의 법인 설립허가

6.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총괄

7.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추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추진실적 평가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지원

9.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

<u>국제협력에 대한 지원</u> <u>7의4.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u> <u>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u> <u>8. 대형 연구개발사업단의 법인</u> <u>설립허가</u> <u>9. 에너지·환경 등 공공 분야</u> <u>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지원</u> <u>10. 원천연구 분야 인력양성 및</u> <u>국제협력 지원 총괄</u> <u>11.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u> <u>기술지원체제 관련 국내 창구</u> <u>역할 수행</u> <u>12.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u> <u>기술지원체제 관련 협상·자</u> <u>문·검토·이행 등에 관한 사</u> <u>항</u> <u>13.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u> <u>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u> <u>술집행위원회(TEC)의 활동</u> <u>및 의제 대응</u> <u>14.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u> <u>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u> <u>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u> <u>활동 및 의제 대응</u> <u>15. 국내 유관기관의 기후기술</u> <u>센터네트워크 활동 촉진 및</u>	<u>력 양성 및 지원기관 육성·</u> <u>발전 지원</u> <u>10. 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u> <u>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u> <u>“빅데이터”라 한다) 관련 원천</u> <u>기술 연구개발 지원</u> <u>11.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u> <u>어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 지</u> <u>원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u> <u>12.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u> <u>· 지원 총괄 및 제도의 운영</u> <u>13.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u> <u>11조 제2항에 따른 나노랩센</u> <u>터의 구축·운영</u> <u>14.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u> <u>국제협력 지원</u> <u>15.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u> <u>천기술 개발 관련 기본·시행</u> <u>계획 수립·추진</u> <u>16.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u> <u>천기술 개발 관련 법령·제도</u> <u>의 운영·발전</u> <u>17.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u> <u>천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u> <u>업 지원</u> <u>18.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u>
---	---

지원

16.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와 재정지원체제
간 연계 촉진

17.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NDE)로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내 기
후변화대응기술의 이전·확산
지원

18.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녹색
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
성장기구(GGGI), 유엔환경계
획(UNEP), 유엔개발계획(UN
DP),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
(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협
력에 관한 사항

19.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기후
변화대응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관련 인력 양성 지원

2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첨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19.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0. 나노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인프라 구축 지원

21. 나노기술지도 작성 및 나노
기술영향평가 계획수립·시행

22.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디
지털화 정책 수립 및 지원

23. 양자컴퓨팅 관련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24.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및 인
력양성

25. 양자컴퓨팅 국제협력

추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및 추진실적 평가

2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지원

2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기관 육성·발전 지원

23. 초(超)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24.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전문연구인력 양성

25.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지원 총괄 및 제도의 운영

26.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나노팹센터의 구축·운영

⑩ 생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2.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법령·제도

⑩ 첨단바이오기술과장-----
-----.

1.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2. 생명공학 육성, 뇌연구 촉진, 인지과학 등 관련 법령·제도

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3. 삭 제

4.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5. 생명공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삭 제

7.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개발 사업, 바이오 분야 부처 연계 사업 추진

8.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뇌 연구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9. 삭 제

10. 생명공학정책센터 육성·지원

11. 한국뇌연구원 설립·운영

12.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13. 생명공학·뇌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14.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15. 감염병 연구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연

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3. 생명공학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4. 생명공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개발 사업, 바이오 분야 부처 연계 사업 추진

6. 바이오·기초의과학기술·뇌 연구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7. 생명공학정책센터 육성·지원

8. 한국뇌연구원 설립·운영

9.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운영 및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사항 지원

10. 생명공학·뇌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11.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운영 지원

12. 감염병 연구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시설의 육성·지원

13. 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 한국파스

구기관·시설의 육성·지원

16. 바이러스기초연구소, 바이러스연구자원센터,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및 국가전염상시험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7. 삭 제

18. 생명공학 분야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9. 생명공학 분야 분류체계의 수립·관리 및 개선

20. 생명공학 분야 기술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21. 생명공학 분야 기술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22.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등에 관한 사항

23. 생명공학 분야 통계조사·분석

24. 기초의과학 연구개발의 촉진과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의사과학자 양성

26. 바이오 기술사업화 활성화

퇴르연구소(IP-K) 및 국가전염상시험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14. 생명공학 분야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15. 생명공학 분야 분류체계의 수립·관리 및 개선

16. 생명공학 분야 기술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17. 생명공학 분야 기술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18. 생명공학 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등에 관한 사항

19. 생명공학 분야 통계조사·분석

20. 기초의과학 연구개발의 촉진과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운영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의사과학자 양성

22. 바이오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창업기업 보육

23.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

및 창업기업 보육

24. 합성생물학·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3세대 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육성·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
25. 데이터기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
26.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27. 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28.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조성
29.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전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
30.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육성
31. 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32. 생명연구자원 분야 국제협

⑪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기술 기반 바이오 원천기술의 육성·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
2. 합성생물학·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3세대 치료제 등 바이오 분야 첨단기술의 육성·발전 정책의 수립과 연구개발의 지원
3. 데이터기반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제도 마련
4.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추진
5. 생명연구자원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구개발 사업 지원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

력 증진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

34. 생명연구자원 분야 부처 간 연계 사업 추진

35.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실태 조사

⑪ 공공융합기술정책과장-----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방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운영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3. 융합기술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4.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6.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지원
7. 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분석
8. 다학제(多學際) 간 융합 연구

<u>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종합 관리 및 활용체계 조성</u> 7. <u>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전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u> 8. <u>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육성</u> 9. <u>생명연구자원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u> 10. <u>생명연구자원 분야 국제협력 증진</u> 11.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 관리</u> 12. <u>생명연구자원 분야 부처 간 연계 사업 추진</u> 13. <u>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실태 조사</u>	<u>사업 발굴·지원</u> 9. <u>첨단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육성·지원</u> 10. <u>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u> 11. <u>나노·바이오·정보통신·인지과학 기반 융합연구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지원</u> 12. <u>융합기술 분야 국제협력 지원</u> 13. <u>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 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지원</u> 14. <u>민·군 기술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u> 15.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방 분야 기초·원천연구사업의 기획·추진</u> 16. <u>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계 활동의 촉진 및 지원</u> 17. <u>극한부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단체 육성·지원</u> 18. <u>극한부품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 조사·분석</u>
---	--

⑫ 융합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융합기술 정책 목표·방

19. 극한소재 실증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원

20. 지구과학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추진,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21.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
진

22.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
개발 기획·지원

23. 공공 복지·안전 연구사업
추진

24.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
결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25.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추진 및 성과확산 지원
에 관한 사항

26. 지구과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공공융합연구정책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⑫ 원자력연구개발과장-----
-----.

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

<u>향 설정 및 관련 시책의 수립 · 운영</u> 2. <u>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운영</u> 3. <u>융합기술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u> 4. <u>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u> 5. <u>융합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u> 6. <u>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 의 육성·지원</u> 7. <u>융합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 현황의 조사·분석</u> 8. <u>다학제(多學際) 간 융합 연구 사업 발굴·지원</u> 9. <u>첨단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육 성·지원</u> 10. <u>신성장동력 관련 연구개발 사업 추진</u> 11. <u>나노·바이오·정보통신· 인지과학 기반 융합연구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지원</u> 12. <u>융합기술 분야 및 나노기술 · 미래소재 관련 국제협력 지 원</u>	<u>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u> 2. <u>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방 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의 진흥·이용·개 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 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u> 3. <u>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 괄</u> 4. <u>연구용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u> 5. <u>차세대 노형(爐型)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u> 6. <u>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조정 및 기금의 조성· 관리</u> 7. <u>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이 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 의 정비·보완</u> 8. <u>「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 영 지원 및 원자력연구개발기 관의 육성·지원</u> 9. <u>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u>
--	--

13.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기본·시행계획 수립·추진

14.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15.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관련 연구개발사업 지원

16. 나노기술개발·미래소재원천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17. 나노기술·미래소재 관련 분야 전문연구인력 양성 및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18. 나노안전관리 연구개발사업 추진·인프라 구축 지원

19. 나노기술지도 작성 및 나노기술영향평가 계획수립·시행

20.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10. 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정보의 조사·분석·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11.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산학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12. 원자력 및 방사선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13.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14.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지원

15.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양성 계획 수립 및 산학연 원자력 인력 협의체 구성·운영

16.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책 수립 및 원자력 이해제고사업에 관한 사항

17.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협력 지원 총괄

18. 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

19. 방사선,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기반 확충

- 20. 방사선 의학 연구 지원 및
이용인력 육성·훈련
- 2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관
리
- 22. 국제원자력협력 관련 정책
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3. 원자력기술 수출 진흥계획
의 수립·추진
- 24. 국가 간 원자력협력협정의
제·개정
- 25.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 26.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
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지원
- 27.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
·지원
- 28. 원자력 선진기술 보유국과
의 협력 및 원자력 후발국의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29. 국제기구(IAEA, IFNEC 등)
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 30.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
술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내 원자력에너지
기구(NEA) 협력사업 운영의

⑬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수
립·조정

2. 「우주개발 진흥법」, 「천문
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

지원

31.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
협정(RCA) 사무국, 아시아원
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
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2. 연구용 원자로 및 중소형 원
자로의 해외수출 지원

33. 양자간 및 다자간 원자력협
력 기술 지원 총괄

34. 남북한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35.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
제포럼(GIF)의 운영

36. 원자력 관련 국제 공동연구
사업의 지원 및 관리

37. 원자력 국제기구 및 관련 기
관의 해외 인턴십 지원

38.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
발 지원

⑬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
-----.

1. 대형연구시설 관련 중·장기
계획의 수립·추진

2. 대형연구시설 관련 법령·제
도의 정비·보완

<u>를」 등 우주 분야 관련 법령</u> <u>· 제도의 운영 · 발전</u>	<u>3. 대형연구시설 관리 및 활용</u> <u>지원</u>
<u>3.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u> <u>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 · 지원</u>	<u>4. 대형연구시설 관련 산학연</u> <u>생태계 육성</u>
<u>4. 삭 제</u>	<u>5. 대형연구시설 전문인력 양성</u> <u>및 관련기관 육성·지원</u>
<u>5.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u>	<u>6.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u> <u>발 육성 · 지원</u>
<u>6.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u> <u>과 활용에 관한 사항</u>	<u>7. 대형가속기 관련 국제협력에</u> <u>관한 사항</u>
<u>7. 우주환경 보호 · 감시체계의</u> <u>구축 · 운영</u>	<u>8. 국내 대형 가속기 간 효율적</u> <u>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u>
<u>8. 우주물체 등 우주위험 대비</u> <u>계획 수립</u>	<u>9. 해외 대형연구장비의 공동활</u> <u>용 지원에 관한 사항</u>
<u>9. 우주물체에 대한 예비등록</u> <u>및 등록사항의 관리</u>	<u>10.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술개</u> <u>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u> <u>관한 사항</u>
<u>10. 우주발사체 관련 산업체 생</u> <u>태계 육성</u>	<u>11. 양성자가속기 관련 기술개</u> <u>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u> <u>관한 사항</u>
<u>11. 우주발사체 수출산업화 계</u> <u>획 수립</u>	<u>12. 중이온가속기 관련 기술개</u> <u>발, 구축 및 시설 활용 지원에</u> <u>관한 사항</u>
<u>12. 위성체, 부품 등 위성산업</u> <u>육성 · 지원</u>	<u>13. 과학기술분야 연구데이터</u> <u>관리 및 활용 지원 총괄</u>
<u>13. 삭 제</u>	
<u>14. 삭 제</u>	
<u>15. 민 · 군 기술협력 연구개발</u> <u>사업의 추진</u>	
<u>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u> <u>국방 분야 기초 · 원천연구사</u>	

업의 기획·추진

17.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방 분야 연구기관
간의 협력·연계 활동의 촉진
및 지원

18. 삭 제

19. 삭 제

20. 삭 제

21. 우주문화확산 및 저변확대
에 관한 사항

22. 삭 제

23.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
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
· 추진

24. 우주 분야 업무 관련 법인·
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우주개발 분야 산학연 교류
협력 증진 및 우주개발 전문
기관의 육성·관리

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보유 우주핵심기술의 민
간 이전에 관한 사항

27. 우주기술 연구기획심사평가
사업 지원

28. 우주개발 관련 전략기술의

이전 · 재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 · 관리

29.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
한 사항

30. 지구과학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 · 추진,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기획 · 추진에 관한 사항

3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 추진

32.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
개발 기획 · 지원

33. 공공 복지 · 안전 연구사업
추진

34.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
결 관련 정책의 수립 · 추진

35.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
결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 · 추진 및 성과확산 지원
에 관한 사항

36. 한국형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 구축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 · 시행 및 기술의 개발 ·
지원

37. 우주산업 실태조사 등 국내
외 통계 및 현황에 관한 사항

38. 삭 제

39. 삭 제
40. 삭 제
41. 삭 제
42. 우주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추진
43. 우주 분야 국제조약·협정
의 이행
44. 우주 관련 국제규범 협력에
관한 사항
45. 우주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6. 우주 분야 국제 공동연구사
업의 참여 및 관리에 관한 사
항
47.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
항
48. 우주 분야 국제회의 및 국제
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9. 지구과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거대공공연구정책
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 ⑭ 우주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⑭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장---

분장한다.

1. 인공위성 개발 정책의 수립
· 추진
2. 다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중
형위성 등 저궤도 실용위성의
개발 및 지원
3.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
원
4. 과학기술위성, 차세대 소형위
성, 초소형위성 등 소형위성의
개발 및 지원
5. 우주핵심기술 검증 체계 구
축
6. 국가위성정보종합계획 수립
· 시행
7. 삭 제
8.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
개발 및 지원
9. 위성정보 활용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10. 인공위성의 관제와 지상국
구축·운영
11. 국가위성정보통합센터 및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
원·육성
12. 국가위성정보활용 인력양성

-----.

1. 과학기술 분야 녹색성장 관
련 정책 및 제도 개선
2.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핵심 연구인력
양성·지원
3.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중장
기계획의 수립·추진
4.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추진
5.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국제
협력에 대한 지원
6.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에너지·환경 등 공공 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지원
8.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국내 창구
역할 수행
9.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 관련 협상·자
문·검토·이행 등에 관한 사
항
10.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
술집행위원회(TEC)의 활동

계획 수립·시행

- 13. 국가위성정보활용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 14. 범부처 위성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운영
- 15. 인공위성정보의 수신·처리·보급 등 기반구축
- 16. 위성영상판매 전문기업 육성
- 17. 우주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의 수립·추진
- 18. 우주운송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 19. 우주운송시스템 검증 체계 구축
- 20.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추진
- 21. 우주발사체 개량 계획 수립
- 2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전담평가단 운영
- 23. 발사지원시설 신축 및 확장에 관한 사항
- 24. 우주센터의 개발·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 25.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시

및 의제 대응

- 11.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를 구성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활동 및 의제 대응
- 12. 국내 유관기관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활동 촉진 및 지원
- 13.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와 재정지원체제 간 연계 촉진
- 14.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NDE)로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국내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이전·확산 지원
- 15.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험설비의 구축·운영

26.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27. 액체 및 고체 등 로켓엔진
개발에 관한 사항

28. 과학로켓(Sounding Rocket)
개발에 관한 사항

29. 우주 분야 기초연구 및 핵심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추진

30.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
획의 수립·시행

31. 달탐사선, 우주로봇 등 우주
탐사기반 기술의 개발·지원

16.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규정된
기술지원체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지정기구로서 기후

변화대응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관련 인력 양성 지원

17.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
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
구개발사업 지원

18.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기
본계획의 수립·추진

19. 핵융합 분야 관련 국제협력
에 관한 사항

20.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관
련 장치 개발·제작,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및 핵융합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21.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
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관
의 육성·지원

22.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
치 등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
비 고도화에 관한 사항

23.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⑮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연구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국가 원자력정책의 목표·방향 설정과 이에 따른 원자력 및 방사선의 진흥·이용·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3.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총괄
4. 연구용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5. 차세대 노형(爐型) 개발 및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6.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 수립·조정 및 기금의 조성·관리
7. 원자력 및 방사선 진흥·이용·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보완

24. 플라즈마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5.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분야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⑮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
2. 특정연구기관 육성 관련 법령·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민간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4.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과제의 발굴·기획
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
6. 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기획성과관리사업 운영
7. 과학기술 분야 사업의 기술료 제도 운영·개선

8.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
영 지원 및 원자력연구개발기
관의 육성·지원

9. 원자력 및 방사선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허가·육성 및
지원

10. 국내외 원자력 및 방사선 관
련 정보의 조사·분석·보급
및 원자력백서 발간

11.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산학
연 간 협동연구의 지원

12. 원자력 및 방사선 연구개발
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위원
회의 운영 지원

13. 원자력 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지원

14.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
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
지원

15. 원자력 전문인력 확보·양
성 계획 수립 및 산학연 원자
력 인력 협의체 구성·운영

16. 연구용원자로 수출 촉진 대
책 수립 및 원자력 이해제고
사업에 관한 사항

8. 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
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
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소관 사항은 제외한
다) 등 평가에 관한 사항

10. 공공연구성과 일자리 협업
지원 및 조정 총괄

11. 공공연구성과 일자리 창출
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

12. 공공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 지원 정책 수립

13. 공공연구성과의 활용·보급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사
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
원

15.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연구성과 관리·분석·
보호·활용(기술이전 및 사업
화를 포함한다)·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

16.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17. 양자 간 및 다자 간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협력 지원 총
괄

18. 방사선연구개발기관의 육성
· 지원

19. 방사선, 방사선동위원소 이
용기반 확충

20. 중입자치료시스템의 기술개
발 육성 · 지원

21. 방사선 의학 연구 지원 및
이용인력 육성 · 훈련

2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 관
리

23. 방사광가속기 관련 국제협
력에 관한 사항

24. 국내 대형 가속기 간 효율적
연계 촉진에 관한 사항

25. 방사광가속기 시설 및 해외
대형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
원에 관한 사항

26. 방사광가속기 시설 활용 관
련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전문
인력 양성 · 지원 및 관련 기
관의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27. 삭 제

28. 삭 제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
학 · 연구기관 지원

1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
성화 지원

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
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연구사업화에 관한 사
항

21. 과학기술 분야 기술지주의
활성화 지원

22. 그 밖에 연구성과혁신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항

29. 삭 제

30. 삭 제

31. 삭 제

32. 삭 제

33. 삭 제

34. 삭 제

<16> 거대공동연구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원자력협력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원자력기술 수출 진흥계획의
수립·추진

3. 국가 간 원자력협력협정의
제·개정

4. 원자력 분야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5.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
인력 및 기관의 육성·지원

6.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의 육성
·지원

7. 원자력 선진기술 보유국과의
협력 및 원자력 후발국의 지
원·협력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IAEA, IFNEC 등)
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16> 연구산업진흥과장-----
-----.

1.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육성·
지원

2. 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

3. R&D 지식재산협의회 육성·
지원

4.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
원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
구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활용 촉진

6.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연구장비의 개발 및 신뢰성
평가체계 구축·지원

8. 연구장비산업 육성·지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9. 연구산업 기획·육성 및 지

9.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 협력사업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원자력에너지기구(NEA) 협력사업 운영의 지원

10.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RCA) 사무국, 아시아원자력협력포럼(FNCA) 등 원자력 관련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1. 연구용 원자로 및 중소형 원자로의 해외수출 지원

12. 양자간 및 다자간 원자력협력 기술 지원 총괄

13. 남북한 원자력협력 및 우주 협력에 관한 사항

14.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국제포럼(GIF)의 운영

15. 원자력 관련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및 관리

16. 원자력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의 해외 인턴십 지원

17. 중소형원자로 등의 기술개발 지원

18.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및 연

원에 관한 사항

10. 연구산업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11.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12.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과 실태조사의 실시

13.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육성

14.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1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개선

17.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8. 신규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전기획·조정 총괄

19. 산학연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업 부설연구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0. 협동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구개발사업 지원

19. 핵융합 에너지 개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0. 핵융합 분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관련 장치 개발·제작, 기술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및 핵융합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22.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관의 육성·지원

23.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 에너지 연구장비 고도화에 관한 사항

24.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 조성

25. 플라즈마 분야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17>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활

2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법령·

<u>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u> 3. <u>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운영 및 개선</u> 4. <u>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인프라 조성</u> 5. <u>삭 제</u> 6. <u>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등 산학연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u> 7. <u>삭 제</u> 8. <u>삭 제</u> 9. <u>특정연구기관 육성 관련 법령·제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10. <u>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민간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육성·지원</u> 11. <u>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과제의 발굴·기획</u> 12. <u>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u> 13. <u>산학연 협력을 통한 연구성</u>	<u>제도의 운영</u> 3. <u>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의</u> 4. <u>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 보좌</u> 5. <u>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u> 6. <u>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해제</u> 7. <u>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 및 감독</u> 8. <u>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u> 9. <u>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u> 10. <u>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주승인 등 연구개발특구의 관리</u> 11. <u>연구소기업 설립 승인·육성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u> 12. <u>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u> 13. <u>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지</u>
--	--

<u>과의 활용·확산 관련 기획성</u> <u>과관리사업 운영</u> 14. <u>과학기술 분야 사업의 기술</u> <u>료 제도 운영·개선</u> 15. <u>신규 산학연 협력사업의 사</u> <u>전기획·조정 총괄</u> 16. <u>산학연 공공연구성과를 활</u> <u>용한 기업 부설연구소 등 지</u> <u>원에 관한 사항</u> 17. <u>협동연구개발 촉진 관련 법</u> <u>령·제도의 운영·발전</u> 18. <u>연구성과 사업화를 위한 전</u> <u>문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u> 19.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u> <u>정부출연연구기관(국가과학기</u> <u>술연구회 소관 사항은 제외한</u> <u>다) 등 평가에 관한 사항</u> 20. <u>공공연구성과 일자리 협업</u> <u>지원 및 조정 총괄</u> 21. <u>공공연구성과 일자리 창출</u> <u>조사·분석 및 통계 관리</u> 22. <u>공공연구성과 기반 실험실</u> <u>창업 지원 정책 수립</u> 23. <u>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u> <u>한 민간 연구기관과의 협력</u> <u>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관한</u>	<u>원</u> 14. <u>특구육성사업의 추진</u> 15. <u>연구개발특구별 종합평가</u> <u>계획 수립·추진</u> 16. <u>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u> <u>정책 수립·시행 및 법령 운</u> <u>영</u> 17. <u>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u> <u>위원회·협의회 운영</u> 18. <u>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u> <u>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u> <u>지원</u> 19. <u>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u> <u>산·학·연 협력 지원</u> 20. <u>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u> <u>구·사업화 인력 양성, 교류</u> <u>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지</u> <u>원</u> 21. <u>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u> <u>·기능지구의 연계 및 발전방</u> <u>안 수립·추진</u> 22. <u>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u> <u>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u> <u>및 세부방안 마련</u> 23. <u>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u> <u>지구 육성시책 수립·추진</u>
--	---

사항

24. 공공연구성과의 활용·보급
관련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사
업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과학기술일자리혁
신관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
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연구산업진흥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5.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
치·운영 및 평가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력

27. 지역 수요맞춤형 과학기술
사업의 추진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와의 협력

29.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의 운영

30.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지정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및 감독 등에 관
한 사항

31. 연구개발 특구 규제 신속확
인 제도의 운영

32.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제품
·서비스 임시허가 제도의 운
영

<18>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
-----.

1. <u>삭 제</u>	1. <u>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u>
2. <u>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육성·지원</u>	2. <u>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술 관련 연계·협력 지원</u>
3. <u>산학연 협동연구의 촉진 및 기술교류의 활성화</u>	2. <u>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u>
4. <u>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u>	3. <u>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령·제도 운영·발전</u>
5. <u>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야 연구성과 관리·분석·보호·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다)·확산 지원 및 성과통계 관리</u>	4. <u>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사항</u>
6. <u>R&D 지식재산협의회 육성·지원</u>	5. <u>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u>
7. <u>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6.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능의 정립·조정에 관한 사항</u>
8. <u>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 및 공동활용 촉진</u>	7. <u>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u>
9. <u>삭 제</u>	8.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 관련 시책의 수립·추진</u>
10. <u>대학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u>	9. <u>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율적·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u>
11. <u>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학·연구기관 지원</u>	

12.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지원

13. 연구장비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4. 연구장비의 개발 및 신뢰성 평가체계 구축 · 지원

15. 연구장비산업 육성 · 지원 및 관련 일자리 창출

16. 연구산업 기획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연구산업 관련 법령 · 제도의 운영 · 개선

18.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19.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과 실태조사의 실시

20.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및 육성

<19>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 · 기획

2. 연구개발특구에 관한 법령 · 제도의 운영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협의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 · 연계 활성화 지원

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 연구 · 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삭 제>

4.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운영 보좌
5.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는 자
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6.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해
제
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
원 및 감독
8. 연구개발특구의 운영 및 육
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
의
9.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추
진 및 관리
10.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입주승인 등 연구개
발특구의 관리
11.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육
성 및 첨단기술기업 지정
12.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원 및 생활여건
개선
13.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연
구소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지
원
14. 특구육성사업의 추진
15. 연구개발특구별 종합평가

계획 수립·추진

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

정책 수립·시행 및 법령 운
영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위원회·협의회 운영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국내외 우수인력의 유치 및
지원

1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학·연 협력 지원

2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

구·사업화 인력 양성, 교류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지
원

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

· 기능지구의 연계 및 발전방
안 수립·추진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

구개발특구 간 연계시책 수립
및 세부방안 마련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

지구 육성시책 수립·추진

24.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5.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

치·운영 및 평가

2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회와의 협력

27. 지역 수요맞춤형 과학기술
사업의 추진

2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와의 협력

29.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의 운영

30.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지정 기관·기업에 대한
지원·관리 및 감독 등에 관
한 사항

31. 연구개발 특구 규제 신속확
인 제도의 운영

32.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제품
·서비스 임시허가 제도의 운
영

<20> 연구기관지원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과학기
술 관련 연계·협력 지원

2.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

<삭 제>

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본정
책 수립 및 육성·지원 총괄

3.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
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법
령·제도 운영·발전

4.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
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
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기능의 정립·조정에 관
한 사항

7.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
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인력 관련 시책의 수
립·추진

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자율적·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1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
연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과
의 협력·연계 활성화 지원

<u>1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u>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해외 연구·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u>	
<u>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역 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u>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① ~ ④ (생 략) ⑤ 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u>과학축전</u> 등 일반국민을 대 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학기술 공감활동의 개최·지원 13. (생 략) <u>14. 무한상상실의 구축·운영·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15. · 16. (생 략) 17. <u>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u>의 육성·지원 <u>1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의 운영·지원</u>	제8조(미래인재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대한민국 과학축제</u> ----- -----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15. · 16. (현행과 같음) 17. <u>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 단</u>----- <삭 제>

19. ~ 24. (생략)	19. ~ 24. (현행과 같음)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 ~ ③ (생략)	제13조(과학기술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u><신설></u>	<u>26.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u>
<u><신설></u>	<u>27. 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u>
<u><신설></u>	<u>28.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에 관한 조사·연구</u>
<u><신설></u>	<u>29. 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관련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u>
<u><신설></u>	<u>30. 미래성장동력 기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운영</u>
<u><신설></u>	<u>31.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 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설></u>	<u>32. 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u>
<u><신설></u>	<u>33. 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u>

⑤ (생 략) ⑥ <u>성장동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및 발전 시책 수립</u> 2. <u>미래성장동력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및 민간과의 협력</u> 3. <u>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에 관한 조사·연구</u> 4. <u>미래성장동력 발굴·기획 관련 전문기관 육성 등 인프라 확충</u> 5. <u>미래성장동력 기획·발굴 관련 범부처협의체 구성·운영</u> 6. (생 략) 7. <u>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8. <u>미래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 및 조정</u> 9. <u>미래성장동력 사업의 관계 부처 간 공동추진 및 융합 기획</u> 10. ~ 12. 삭 제 13. ~ 17. (생 략)	<u>획</u> ⑤ (현행과 같음) ⑥ <u>전략기술육성과장-----</u>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13. ~ 17.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u>18. 국가전략기술 육성 시책의 기획·총괄</u>
<u><신 설></u>	<u>19. 국가전략기술의 선정·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0.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 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 립·종합 및 조정</u>
<u><신 설></u>	<u>21.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 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u>
<u><신 설></u>	<u>22.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 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3.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u>
<u><신 설></u>	<u>24.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등 분 야별 지식·정보관리 및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5.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술·인 력의 육성·확보 등에 관한 사 항</u>
<u><신 설></u>	<u>26.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융합 기획·조정</u>
<u><신 설></u>	<u>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 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및 분야 별 범부처·전문가 회의체의 설치·운영</u>

<신 설>

제18조(우주전파센터) ① 우주전

파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
한다.

② 우주전파센터장은 다음 사무
를 분장한다.

1. 우주전파의 지상 및 위성관
측기술 개발계획의 수립·조
정

2. 태양흑점 폭발과 지구 대기
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
지의 변화에 따른 전리층(이
온화된 대기 영역)·지자기
(지구에서 자기권계면까지 형
성된 자기장) 교란 등 우주전
파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평가 및 예·경보에 관
한 사항

3. 우주전파·전리층·지자기의
예보·경보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전파 분야 국내외 표준
화에 관한 사항

28.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

<삭 제>

5. 우주전파 예보 및 관측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6. 우주전파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7. 예보·경보 등 우주전파 관 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전파 관측자료의 수신· 처리·보존, 국내외 분배·교 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우주전파 관측시설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 우주전파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 제33조(한시정원) ① 삭 제 ② ~ ④ (생 략) ⑤ 우주 국제협력 기능 강화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 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 년 10월 31일까지 별표 13에 따 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에 둔다.	제33조(한시정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820</u>		<u>793</u>	-27	
	.		.		.		
	.		.		.		
일반직 계			<u>811</u>		<u>784</u>	-27	
	.		.		.		
	.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0</u>		<u>19</u>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48</u>		<u>47</u>	-1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사무 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사무 관 · 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u>69</u>	<u>66</u>	-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u>292</u>	<u>284</u>	-8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	<u>230</u> .	<u>219</u> .	-1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 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 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 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 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 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식품 위생주사보 · 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	<u>60</u> .	<u>58</u> .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 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 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 보 · 사서서기보 · 기상서기보 · 농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해양 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의료 기술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u>12</u>	<u>11</u>	-1
·	·	·	
·	·	·	

[별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20	793	-27
일반직 계	811	784	-2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0	19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8	47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통계사무 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보건사무관·사서사무관·기상 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 관·수의사무관·의료기술사무 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69	66	-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통계 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 보건사무관 · 사서사무관 · 기상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료기술 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항공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연구관 .	<u>321</u> .	<u>313</u> .	-8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통계주사 · 환경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 기상주사 · 농업주사 · 임업주사 · 수의주사 · 해양수산주사 · 보 건주사 · 의료기술주사 · 식품위 생주사 · 항공주사 · 방재안전주 사 또는 연구사 .	<u>201</u> .	<u>190</u> .	-1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통계주사보 · 환경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사서주사보 · 기상주사보 · 농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수의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보건주사보 · 의료기술주사보 · 식품위생주사보 · 항공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	<u>60</u> .	<u>58</u> .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통계서기보 · 환경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 방송통신서기보 · 사서서기보 · 기상서기보 · 농업서기보 · 임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보건서기보 · 의료기술서기보 ·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 .	<u>12</u> . .	<u>11</u> . .	-1

[별표 5]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87</u>	<u>169</u>	-18
일반직 계	<u>187</u>	<u>169</u>	-18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u>5</u>	<u>4</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22</u>	<u>20</u>	-2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53</u>	<u>50</u>	-3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0</u>	<u>29</u>	-1
·	·	·	

위생주사보	<u>1</u>	<u>0</u>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8</u>	<u>15</u>	-3
·	·	·	
·	·	·	
공업연구사	<u>28</u>	<u>22</u>	-6
·	·	·	
사무운영주사보	<u>2</u>	<u>1</u>	-1
·	·	·	
·	·	·	

[별표 6]

국립전파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87</u>	<u>169</u>	-18
일반직 계	<u>187</u>	<u>169</u>	-18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u>5</u>	<u>4</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24</u>	<u>22</u>	-2
·	·	·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51</u>	<u>48</u>	-3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30</u>	<u>29</u>	-1
·	·	·	

·	·	·	
위생주사보	<u>1</u>	<u>0</u>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18</u>	<u>15</u>	-3
·	·	·	
·	·	·	
공업연구사	<u>28</u>	<u>22</u>	-6
·	·	·	
사무운영주사보	<u>2</u>	<u>1</u>	-1
·	·	·	
·	·	·	

[별표 7]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211</u>	· · <u>214</u>	+3
· ·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u>212</u>	· · <u>213</u>	+1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 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u>34</u>	· · <u>35</u>	+1
· · 통신운영주사보	· · <u>6</u>	· · <u>3</u>	-3

·	·	·	
전기운영서기	<u>2</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

[별표 8]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213</u>	· · <u>216</u>	+3
· ·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 · <u>209</u>	· · <u>210</u>	+1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 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u>32</u>	· · <u>33</u>	+1
· · 통신운영주사보	· · <u>6</u>	· · <u>3</u>	-3

·	·	·	
전기운영서기	<u>2</u>	<u>1</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7</u>	<u>6</u>	-1